

현 시국에 대한 전국 변호사 결의문 - 대통령, 국회, 검찰에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중대 범죄행위이다. 이에 전국의 변호사들은 현 시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즉각 체포영장 청구, 청와대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라.
3.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와 재벌 및 공모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라.
4. 검찰은 재벌 대기업과 사학재단의 경제질서 교란 및 공정경쟁 파괴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라.
5.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대통령의 범죄를 조장·방조한 김기춘과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6. 국회는 국정조사와 탄핵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
7. 국회는 대통령을 감시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아울러 우리는 조만간 임명될 특별검사에게도 막중한 사명감으로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정의롭게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출되는 국민의 분노와 여망을 깊이 새겨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더 강하게 헌신해 나갈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어깨를 맞댄 이 광화문 거리에서, 이 땅의 민주화와 기본적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故 조영래 변호사의 혼이 깃든 이 조영래 홀에서 우리는 위와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2016. 11. 2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퇴진하라

검찰, 박근혜와 측근들 어디까지 기소했나

순번	죄명	형량	법조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3조
2	강요/강요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3	증거인멸교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
4	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7조

여기까지 기소



검찰 기소 절취선

5	제3자뇌물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금품 몰수 또는 가액추징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형법 제1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134조
6	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금품 몰수 또는 가액추징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134조
7	업무상 횡령,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형법 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9	외교상기밀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3조
10	대통령기록물관리예 관한법률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대통령기록물관리예 관한법률 제30조, 제14조, 제19조
11	의료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2개월	의료법 제17조, 제19조, 제89조
12	외국환거래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8조, 제29조
13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14	직무유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2조
15	조세범처벌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3조
16	당신이 생각하는 죄목과 형량을 직접 써 주세요.		

이거 전부 기소 안함

공 소 장

2016형제000000호

2016. 11. 26.

수신자 법원

발신자 검찰청

제 목 공 소 장

검 사 대한민국 국민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박근혜
	주민등록번호	520202 - XXXXXXXX
	직 업	대통령
	주 거	청와대
죄 명	본 적	우 주(안드로메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제3자뇌물제공	
공 소 사 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수뢰	
	마.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바. 외교상기밀누설죄	
	사. 공무상비밀누설	
	아. 대통령기록물관리예 관한법률위반	
	자. 직무유기	
	현직 대통령인데도 국가 중대 재해 상황에서 관저에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뭔가를 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사면권과 조세징수권 등을 남용하여 기업들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받게 하였으며,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인인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을 넘겼고, 위 최순실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그 비용을 세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적 용 법 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4조, 형법 제129조, 형법 제355조, 제356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형법 제113조, 형법 제127조, 대통령 기록물관리예 관한법률 제30조, 제14조, 제19조, 형법 제12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2조, (...)
	신 병	청와대 관저에 기거 중
	변 호 인	유영하
붙 임	국민 소환장	